##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718 제출연월일: 2024. 10. 16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적·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환경유해인자 시험·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해당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해당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'정당한 사유'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제5항제4호 중 "지정받은 후"를 "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의2(검사기관의 지정 등)	제23조의2(검사기관의 지정 등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	5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	
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	
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	
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	
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	
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검사기관으로 <u>지정받은 후</u> 1	4 <u>지정받은 후 정</u>
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	<u>당한 사유 없이</u>
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	
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	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